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52203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0. 12. 10.

판결 선고2021. 2.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16,775원 및 그 중 2,399,132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13,299,9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2020. 9. 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경기도 이천시 C 철도용지 982㎡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피고 B과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2. 31. 접수 제6017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6. 12. 위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6. 1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7. 7. 24. 위 피고가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2. 7. 2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제1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6. 12. D으로부터, 제2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7. 24. E은행으로부터 각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11. 22. 이래 이자연체 상태에 있다가 2019. 12. 1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였다. 이에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제1 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2. D에게 2,481,832원, 제2 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17. E은행에게 13,493,968원 합계 15,975,8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417,600원이며, 제1, 2 보증약정 대위변제금 중 일부 276,700원을 회수하여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75원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그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C 철도용지 98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31. 피고 B에게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6,116,775원(=총잔존대위변제금 15,699,100원 + 일부회수에 따른 총확정지연손해금 75원 + 법적절차비용 417,600원) 및 그 중 2,399,132원(제1 보증약정 잔존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20. 4. 2.부터, 13,299,968원(제2 보증약정 잔존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 및 E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D 및 E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전)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따른 D으로부터의 2015. 6. 12.자, E은행으로부터의 2017. 7. 24.자 각 대출실행(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9. 11. 22. 이래 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 2019. 12. 13. 원리금분할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인으로서 2020. 4. 2. D에게, 2020. 4. 17. E은행에게 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시기(2019. 12. 31.)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으로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부동산	80,000,000	갑 제8호증 갑구 순번 2
F 토지 및 건물	103,000,000	갑 제10호증의 1
G 토지	1,759,5001) 20,700원 × 979m ² × 85/979	갑 제10호증의 2
H 토지	330,4002) 23,600원 × 4230m ² × 14/4230	갑 제10호증의 3
합계	185,089,900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표와 같은 합계 185,089,9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16,116,775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외에도 ② E은행에 대한 4,887,000원 상당의 카드론채무, I카드에 대한 2,138,000원 상당의 카드론채무, J카드에 대한 2,6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채무, ③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로서 K조합에 대한

40,000,000원 채무, ④ L에 대한 13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채무, ⑤ M에 대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 ⑥ 피고 B에 대한 10,000,000원의 채무 합계 230,741,775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자신의 소유 재산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 내지 부담을 완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A이 자신의 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회기

1) $20,700\text{원} \times 979\text{m}^2 \times 85/979$

2) $23,600\text{원} \times 4230\text{m}^2 \times 14/4230$